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2005. 8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9호

Program & Policy Evaluation Brief No.9

배종학

과세자료의 확보와 형평과세 등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자영업자들의 영수증 발급 기피현상 등으로 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으나 미흡하기 때문에 발급실적이 저조하고, 발급에 대한 유인책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관리, 현금영수증복권제도의 상금구조 변경, 영수증발행 의무화제도 단계적 도입 검토, 근로자 소득공제 및 자영업자 세액 공제 확대 실시 등을 제시한다.

I. 서론

II. 현금영수증제도 추진현황

III.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IV.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

V. 결 론



집 필

배종학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02) 2070-3117
jhbae57@nabo.go.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I. 서 론

- 과다한 현금거래비중과 세원포착 한계, 불형평 과세
 - 최근 신용카드 사용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총민간소비지출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말 현재 41.7%에 불과하고 현금거래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세원을 포착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 세원의 투명화로 조세정의 추구,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
 - 정부는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점과 세원포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세원의 투명화와 형평과세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음.

- 본 평가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현금영수증제도 추진현황

□ 개요 및 법적 근거

- 현금영수증제도는 200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설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2004년 9월 현금영수증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11.16 ~ 12.15)을 한 후, 2005년 1월 1일부터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으로 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결제를 할 경우에 자영업자가 신용카드(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해당 결제금액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자영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에서 일정한 금액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임.

□ 국정과제의 하나, 근거과세 목적

- 현금영수증제도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과제임.
-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 비중이 전체 소비자 거래의 58.3%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조세원칙의 필요성, 그리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과세 금액에 대한 불형평성에서 오는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단계별 추진 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우선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중점 실시하고 있음.

□ 예상 기대효과

- 제도 측면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현금수익에 대한 탈루 입증에 곤란하였으나, 거래내역 파악 등으로 납세자에 대한 과표 현실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현금흐름 파악 가능, 대금 결제 방법의 다원화,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방지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를 기대함.
- 시스템 측면에서 사용편의성과 내부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현금영수증제도는 기존의 신용카드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현금거래내역을 소비자별·사업자별로 조회할 수 있고, 내부업무 활용부문은 소득·부가세·원천징수 업무 활용, 탈세·탈루 방지 등의 재산 업무 활용 등을 할 수 있음.

III.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 효용 측면의 기대효과

- 소비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의 20%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 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발행 수수료 부담이 없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음.

현금영수증 세금혜택 비교

연 도	구 분	계산식	결과 및 혜택	
2004년	소득공제	$(2,000\text{만원} - 4,000\text{만원} \times 10\%) \times 20\% =$	320만원	
	세금혜택	$320\text{만원} \times 19.6\% (\text{주민세 포함한 세율}) =$	627,200원	
2005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2,000\text{만원} - 4,000\text{만원} \times 15\%) \times 20\% =$	280만원
		세금혜택	$280\text{만원} \times 18.7\% (\text{금년부터 소득세율 인하}) =$	523,600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	$(2,500\text{만원} - 4,000\text{만원} \times 15\%) \times 20\% =$	380만원
		세금혜택	$380\text{만원} \times 18.7\% (\text{금년부터 소득세율 인하}) =$	710,600원

주: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2,000만원, 현금 500만원을 사용할 때 비교한 것임.

□ 문제점

-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저조 및 발급기피, 세원 노출 소비자 전가
 - 영수증 발급실적은, 2005년 5월 15일 현재 1일 평균 발급건수는 112만건이고, 2005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발급건수는 1억 919만건을 나타내고 있음.
 - 전체 104만 1천개 가입가맹점 당 1일 평균 1건 정도의 발급실적에 불과하고, 당초 2009년까지 신용카드 거래건수의 2배(36억건) 이상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실적임.
 - 세원 노출을 꺼려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부과될 세금비용을 미리 소비자에게 원래의 제품가격에 웃돈을 얹어 요구하는 예가 대형 전문 유통상가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병의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취약계층 중점관리 문제
 -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과약이 과세현실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변호사, 의사 등에 대한 소득과약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신용카드 가맹점 현황을 보면, 전체 업종별로 2004년도에 91.7%가 가입을 하였으나 병·의원을 제외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가맹률이 84.5%에 불과한 점이 이를 반증해 줌.

- 소비자 인지도 저조, 신용카드 가맹 비용 증가
 - 이용방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주로 현금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나 영수증 발급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앞의 표 세금혜택 비교에서 보듯이 소비자는 전년도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도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 받아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면 소비자는 전년도보다 세금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사업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1%(5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고,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130%를 초과하는 가맹점의 사업자에게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음. 그러나 사업자들은 세액공제 금액이 적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유인책으로의 실효성이 없다고 함.

IV. 향후 개선 과제

□ 현금영수증제도가 국민의 생활속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제도적 측면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액현금거래를 하는 취약계층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관리가 시급히 요청되며, 현금영수증복권제도의 상금구조를 변경, 시행함으로써 홍보효과와 함께 당첨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시스템 측면

- 제도홍보를 통해 미가입 자영업자에 대해 가입을 권장하고, 체크카드와 연계하여 휴대폰 하나로 현금 계좌 결제가 가능(UMPS 활용)하도록 하며,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 금액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효용 측면

-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큰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들은 세액공제 금액이 적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유인책으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현행 세율을 낮추어 현실화함으로써 현금영수증제도 실시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음.

차 례

요 약 / iii

I. 서 론 / 1

II. 현금영수증제도 추진 현황 / 3

- 1. 현금영수증제도 개요 3
- 2. 현금영수증제도 추진 현황 6
- 3. 현금영수증카드시스템 현황 9
- 4. 가맹점 가입 및 영수증 발급 현황 11
- 5. 예상 기대효과 12
 - 가. 제도시행 측면 12
 - 나. 시스템 도입 측면 13
- 6.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관련 예산 15

III.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 17

- 1. 효용 측면의 기대효과 17
 - 가. 소비자 측면 17
 - 나. 사업자 측면 18
- 2. 문제점 19
 - 가. 제도적 측면 19
 - 나. 시스템 측면 22
 - 다. 효용 측면 23

IV.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 / 25

1. 제도적 측면	25
가. 영수증 생활화 운동 등 홍보활동을 통한 발급실적 제고	25
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취약계층 중점관리 강화	25
다. 현금영수증복권제도의 상금구조 변경	26
2. 시스템 측면	28
가. 미가입 자영업자 대책, 현금영수증제도 거래 단계적 의무화	28
나.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정비 및 기타 고려사항	28
3. 효용 측면	29
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사업자 세액공제 확대	29

V. 결 론 / 31

부록 / 34

참고문헌 / 38

I. 서론

정부는 1999년부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¹⁾을 시행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상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왔다. 이로 인하여 원천징수제도를 실시하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총민간소비지출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말 현재 41.7%²⁾에 불과하여 현금거래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자의 과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원을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되고 있다. 이는 형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장애가 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점과 세원포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세원의 투명화와 형평과세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제도는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일부 자영업자들의 영수증 발급 기피현상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본 평가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그 실시배경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금영수증제도의 평가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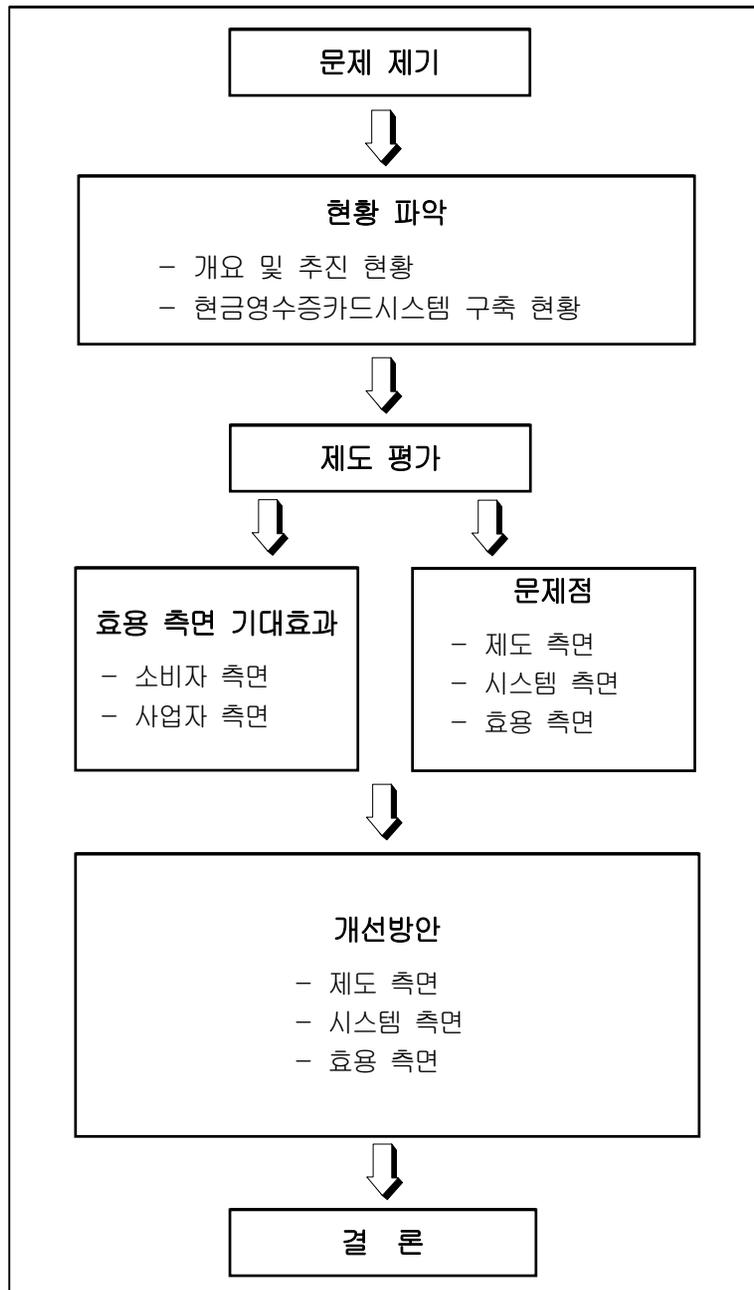
본 평가는 제2장에서 제도의 의의와 추진배경, 예산 등의 현금영수증제도 추진현황을, 제3장에서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평가를 효용 측면의 기대효과와

1) 신용카드 사용활성화를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1999.9), 영수증복권제도(2000)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표 1] 참조, 2004년말 현재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현금거래비중은 58.3%를 차지한다.

제기되는 문제점 위주로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 미흡한 면과 향후 제도의 정착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1]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접근방법



II. 현금영수증제도 추진 현황

1. 현금영수증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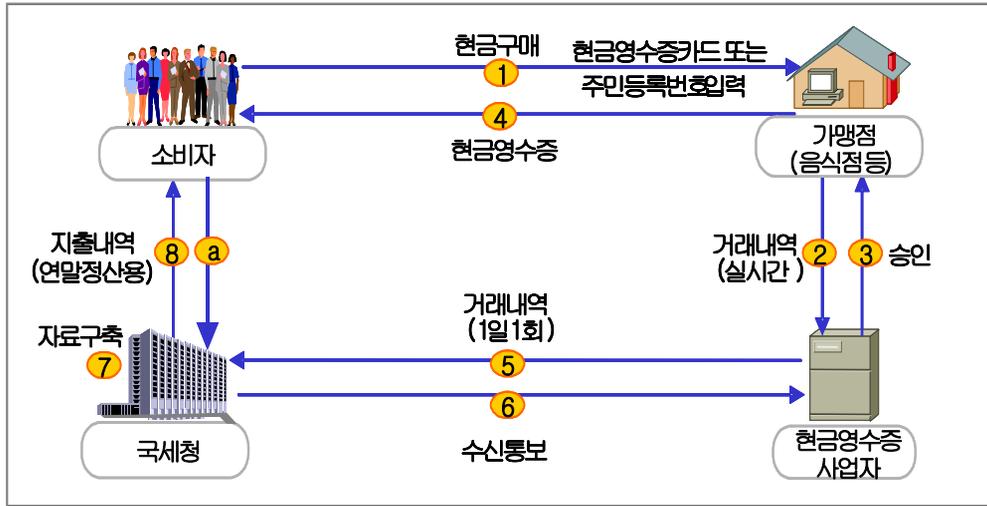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판매업소나 음식점 등에서 현금으로 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결제를 할 경우에 자영업자가 신용카드(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이 내용이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며, 해당 결제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자영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에서 일정한 금액 등을 면제해 주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흐름도³⁾는 [그림 2]와 같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세원의 투명화로 합리적인 형평과세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과세를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금거래에 따른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밝히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분야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과제이다.

3) [그림 2]의 현금영수증제도의 흐름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5,000원 이상 물품구매시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거나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②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 승인 받음(실시간)
-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사용실적을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
- ④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표시)
-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일별 배치)
- ⑥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수신되었음을 통보
- ⑦ 국세청에서 신분인식 매체정보를 기초로 현금영수증 자료를 주민등록번호로 변환하여 자료 구축
- ⑧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지출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
- ⑨ 소비자는 결제내역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그림 2] 현금영수증제도 흐름도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출 자료), 2005. 3.

현금영수증제도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소비시장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표 1]과 같이 전체 소비자 거래의 58.3%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근거 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조세원칙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과세 금액에 대한 불형평성에서 오는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근거는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표 1]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현금거래 비중

(단위: 조원, %)

	민간최종 소비지출	카드사용		현금거래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1998	238.8	30.8	12.9	208.0	87.1
1999	274.9	42.6	15.5	232.3	84.5
2000	312.3	77.9	24.9	234.4	75.1
2001	343.4	135.3	39.4	208.1	60.6
2002	381.0	174.0	45.7	207.0	54.3
2003	388.2	170.5	43.9	217.7	56.1
2004	400.7	167.1	41.7	233.6	58.3

주: 1. 카드사용금액은 현금서비스와 구매전용카드 제외

자료: 1.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출 자료), 2005. 3.

2. 한국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 200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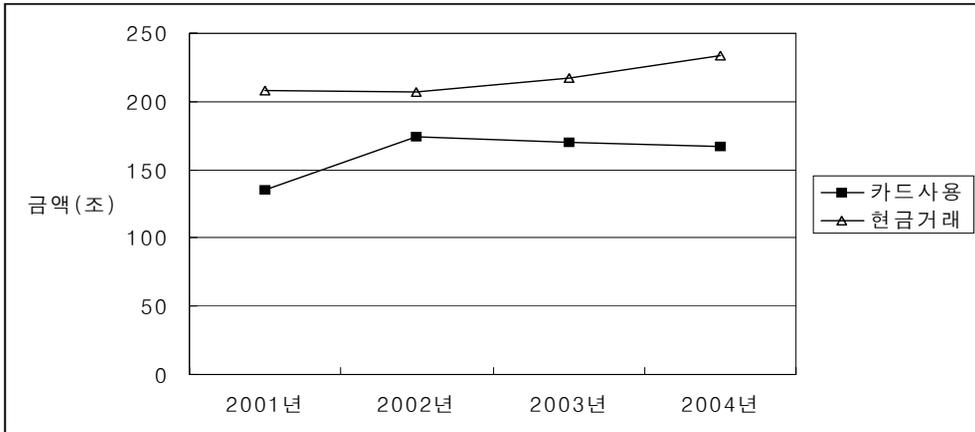
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④, ⑤ 생략

[그림 3]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현금거래 추이



2. 현금영수증제도 추진 현황

현금영수증제도⁵⁾는 2003년 12월 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근거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설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하였고, 2004년 9월 현금영수증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11.16~12.15)을 하였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99년 9월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제도의 실시 등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소비형태와 시장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과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투명한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 하여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표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자

5) 우리나라의 영수증 제도 및 행정의 변천은 1977년 7월의 부가가치세 시행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이전에는 관인영수증제도의 도입과 표준계산서제도의 법제화하였고, 부가가치세 시행 이후의 영수증 행정은 초기 10여년간의 금전등록기 위주의 영수증 행정과 그 이후의 신용카드 중심의 영수증 행정으로 나눌 수 있음.(부록 표 참조)

영업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에 비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점과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현금거래의 정확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현금영수증제도는 [표 3]에서 보듯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대금결제 방식과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서로 다르다. 먼저 사업주체 측면에서는 신용카드제도나 직불카드제도에서는 해당 카드사 또는 은행이 주체가 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주체가 된다. 다음에 사용한다 부분은 신용카드제도는 사용자의 신용한도에 따라 정해지고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현금 지급시에 해당된다. 또한, 조회기 사용 부분은 신용카드 거래나 현금영수증 거래시에 모두 신용카드 조회기를 이용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조회기에 추가로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밖에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달리 주민(사업자)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 적립식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영수증에 서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표 2]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인원, 납부세액

(단위: 천명,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신고인원	근로자 ¹⁾	9,390 (5,520)	11,102 (5,934)	11,555 (6,446)	12,017 (6,187)	11,547 (6,258)
	자영업자	1,342	1,616	1,782	2,010	2,115
결정세액	근로자	43,372	60,770	71,461	69,334	76,412
	증가율		28.6	15.0	△3.0	9.3
	자영업자	35,578	48,031	55,373	57,455	62,887
	증가율		25.9	13.3	3.6	8.6

주: 1. 연말정산 기준, ()은 과세표준 있는 자임.

1) 2004년 귀속 신고자료는 현재 전산처리 중임.

자료: 국세청, 국회요구자료, 2005. 6.

[표 3]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 내용 비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업주체	카드사	은행	국세청
거래승인	카드사	은행	현금영수증사업자
대금결제	신용대출	즉시이체	현금지급
사용한도	신용한도	예금잔액	5,000원 이상
사용시간	제한없음	8~22시	제한없음
가맹점수수료	1.5~4.5%	1~2%	없음
조회기	신용카드 조회기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부착된 신용카드조회기
사용매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① 번호가 13~19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 ② 핸드폰번호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영수증구분표시	없음	없음	현금(소득공제용) 또는 현금(지출증비용) 표시
영수증 서명여부	필요	필요	필요 없음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출 자료), 2005. 3

현금영수증제도는 먼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확보하고 다음에 해당 가맹점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순으로 추진을 하였다. 즉, 2005년 1월 1일부터 소비자가 소매점·음식점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사업장)을 200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위한 행정지도는 2004년도에 2003년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우선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중점 실시하였고, 그 후에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실시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소비자상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3년

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집중적으로 지도 하였으며,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규 구입하는 신용카드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처음부터 내장되도록 하였다.

한편,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부동산투기지역’ 등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내에 위치하고, 사회통념상 연간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 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과표양성화 중점관리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국세청은 2003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도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함께 하도록 하였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신용카드가맹점을 찾아가서 신용카드단말기에 무상으로 설치하며,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설치거부자 명단을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3. 현금영수증카드시스템 현황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현금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현금수입 내역의 파악을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현금 수익에 대한 탈루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카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금자료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불량자 비율을 축소시키고, 수집된 현금거래내역을 신고대상에 활용하여 세금탈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살리도록 한 것이 현금영수증카드시스템을 구축한 목적이다.

현금영수증카드 정보시스템은 [표 4]과 같이 소비자용, 가맹점용, 원천징수 의무자용, 기타 회원가입 및 영수증 복권 당첨 안내로 구분하여 구축되었다. 소비자용 및 가맹점용 서비스 구축 내용을 보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카

드 및 핸드폰 번호 등록, 최근 3개월 건별 사용내역 조회 및 출력, 전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월별 집계자료 조회 및 출력, 지출증빙거래 지정 및 조회, 연말정산 증빙자료 조회 및 출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원천징수의무자용 서비스 구축내용은 종업원 현금결제내역 조회를 위한 권한 등록, 인터넷을 통한 연말정산용 현금결제내역 다운로드, 연말정산용 출력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 현금영수증상담센터 1:1상담, 가맹점 조회, 복권안내 및 당첨사실 조회, 회원가입, 공지사항, 게시판 등 일반적인 홈페이지 기능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4] 현금영수증카드 정보시스템 서비스 내용

구 분	제공서비스
공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등록 및 인증 관리 ○ 각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 및 현금매출세액 공제자료 제출안내 - 기타 제도 홍보 안내
소비자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할 신용카드 등록 ○ 최근 3개월 건별자료 조회, 출력 및 정정 ○ 전년도 12월부터 현재 월까지 월별 누계자료 조회 ○ 연말정산 증빙자료 조회 및 발급
사업자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월 현금 매출 건별 자료 조회 및 출력 ○ 전년도 12월부터 현재 월까지 월별 누계 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현금매출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 조회 및 증빙자료 발급
원천징수의무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한 연말정산용 현금결제내역 다운로드 ○ 연말정산용 출력프로그램 다운로드 ○ 종업원 현금결제내역 조회를 위한 권한 등록
내부직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 및 사업자 민원처리를 위한 현금결제 건별 내역조회 ○ 일별, 주별, 월별, 사업자별, 소비자별 집계내역 조회 ○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자료 발급

자료: 국세청, 「국세행정 정보화 중장기 계획」, 2003. 12.

4. 가맹점 가입 및 영수증 발급 현황

국세청은 2005년 12월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 100만개소,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 인원 300만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2005년 5. 15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 104만 1천개소, 홈페이지 회원가입 인원 342만 4천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5~7]에서 보듯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황은 2004년말 61만 6천개소에서 2005년 5월 15일 현재 104만 1천개소 이고, 홈페이지 가입현황은 2004년말 11만 8천명에서 2005년 5월 15일 현재 342만 4천명을 보이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건수를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억 919만 건이고, 2005년 5월 15일 현재 1일 평균 발급건수는 112만 건에 불과하다. 한편 국세청은 2009년까지 신용카드 거래건수의 2배(36억건) 이상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현황

(단위: 천개소, %)

구 분	2004년말	2005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 15
개소수	616	837	910	989	1,026	1,041
목표 (100만 개소) 대비 비율	54.7	74.2	80.7	87.7	91.0	92.3

주: 가맹점 총 가입대상(소비자 상대업종 중 신용카드 가맹점) : 1,127천개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출 자료), 2005. 6.

[표 6] 홈페이지 회원가입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04년말	2005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 15
누 계	118	1,178	2,207	2,945	3,296	3,424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출 자료), 2005. 6.

6) 국세청, 2005년 사업비 설명자료, 2004. 5.

[표 7]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만건, 억원)

기 간	발급 건수	발급 금액	1일 평균 발급건수
2005. 1	1,360	5,958	44
2005. 2	2,178	9,436	78
2005. 3	2,919	11,525	94
2005. 4	2,831	11,300	94
2005. 5 ¹⁾	1,684	6,290	112
계	10,919	44,510	81

주: 1) 2005. 5. 15. 현재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출 자료), 2005. 6.

5. 예상 기대효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제도시행 측면과 시스템도입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본다.

가. 제도시행 측면

현금영수증제도를 실시하기 전에는 현금거래에 대한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고, 이런 점을 악용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현금수익에 대한 탈루 입증이 곤란하였다. 이 때문에 거래 자료의 파악미비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불형평 과세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과표 현실화 비율을 높일 수 있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흐름 파악이 가능해 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표 8]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금영수증제도는 기존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대금 결제 방법보다 대금결제 방법을 다원화할 수 있다는 점과 소비자의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발생을 현금결제 방식을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통해 현금영수증제도는 개인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한다는 점 등에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납세자 신고자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신고, 자료, 증빙 서류 등 제출 ○ 현금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허위 및 가공자료 속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 카드시스템 도입 ○ 과표 현실화 비율을 높임
신용카드 자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제도도입으로 일일 단위로 신용카드 자료수집 ○ 과표양성화율을 30%나 올렸지만 신용불량자 속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및 가공자료 비율 축소
현금자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함 ○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현금 거래 파악미비로 불평등 과세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불량자 축소 ○ 고소득영업자에 대한 현금흐름 파악

자료 : 국세청, 「국세행정 정보화 중장기 계획」, 2003. 12.

나. 시스템 도입 측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시스템과 연계하여 현금영수증카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사용편의성을 높이고 내부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 9]에서 보듯이 사용편의성 부문은 현금거래 내역을 연별·

사업자별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편의성을 높여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내부업무 활용부문은 신용카드 정보 활용과 같이 현금거래 내역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전산작업으로 정확성 제고와 허위신고 방지 효과가 있으며, 원천징수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현금과표 양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재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고액 재산가의 탈세·탈루 및 체납 방지를 할 수 있으며, 조사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소비성향 분석, 현금흐름 및 현금사용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본다.

[표 9] 현금영수증카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구 분	활용방안	기대효과
사용 편의성	수집된 현금거래내역을 인별/사업자별로 조회 가능토록 함	업무 효율성 증대
내부 업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부가 업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처리 시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하듯이 현금사용 내역도 활용하여 신고자료 대차 시 좀 더 정확하게 불부합 여부 확인 ○ 원천징수 업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 등의 연말정산 시 현금자료에 대한 공제내역을 포함시켜 사용 ○ 재산 업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 재산가의 현금사용 내역을 파악하여 탈세, 탈루, 체납 및 결손 등의 업무와 결부시켜 자금출처 조사를 하기 위한 기반이 됨 ○ 조사 업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구성된 현금영수증 자료분석 DW를 이용하여 조사 착수 전 준비 조사 자료로써 활용하여 현금흐름 및 현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대사 작업에 대한 정확성 증가로 허위 신고가 줄어들 수 있음 ○ 소득공제 항목 추가로 현금과표 양성화 ○ 소비성향 분석이 가능해져 자금 출처 조사 등에 정확도 향상 ○ 조사대상의 현금 사용 내역을 사전에 파악

자료: 국세청, 「국세행정 정보화 중장기 계획」, 2003. 12.

6.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관련 예산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준비와 그에 따른 예산현황은 크게 시스템 구축비용과 현금영수증복권제도로 나눌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예산은 2004년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그 후 고도화 및 확충단계에는 장비 임차료 및 운영 및 유지보수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4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표 10]에서와 같이 시스템구축비 90억 3,200만원중 75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소프트웨어개발비 36억 5,900만원, 장비구입비 24억 8,400만원, 홍보비 10억원을 각각 집행하였다.

2005년도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예산은 시스템 구축비 85억 3,200만원과 현금영수증복권 41억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금영수증제도카드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구축된 신용카드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4년에 구축하고, 현금영수증제도 시행과 함께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그 후에는 정착단계로 계획하고 있다. [표 11]에서 보듯이, 향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현금영수증시스템 고도화 및 확충단계와 정착단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61억 7,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2005년도 현금영수증복권 예산은 총 41억 200만원인데, 현금영수증보상금 36억 200만원과 홍보비 5억원으로 구성되었다.

[표 10] 예산현황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항 목	2004예산 (a)	2004 집행금액	2005예산 (b)	증 감(b-a)	
				증감액	비 율(%)
○ 시스템 구축	9,032	7,520	8,532	△500	△5.5
- 소프트웨어개발비	4,500	3,659	429	△4,071	△90.5
- 장비구입비 (상담센터 포함)	2,882	2,484	5,624	2,742	95.1
- 시설비	300	91	-	△300	△100
- 통신회선임차료	50	24	531	481	1,007.7
- 인건비(상담센터)	130	120	1,440	1,310	1,007.7
- 집기비품(상담센터)	170	142	8	△162	△95.3
- 홍보비	1,000	1,000	500	△500	△50
○ 현금영수증복권	-	-	4,102	4,102	-
- 현금영수증보상금	-	-	3,602	3,602	-
- 홍보비	-	-	500	500	-
합 계	9,032	7,520	12,634	3,602	39.9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출 자료), 2005. 3.

[표 11] 현금영수증 시스템 관련 향후 소요액(2006년~2009년)

(단위: 백만원)

	계	고도화 및 확충 단계		정착 단계	
		2006	2007	2008	2009
○ 기존 장비 임차료	7,452	4,968	2,484	-	-
○ 신규장비 도입임차료	3,531	208	831	1,246	1,246
○ 시스템 구축 및 개발비	2,301	1,354	947	-	-
○ 운영 및 유지보수비	11,353	2,287	2,720	3,155	3,191
○ 전용회선 사용료	3,775	823	903	984	1,065
○ 상담원 인건비	7,759	1,800	1,890	1,985	2,084
합 계	36,171	11,440	9,775	7,370	7,586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출 자료), 2005. 3.

III.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먼저 제도의 시행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측면에서 각각에게 예상되는 효용 측면의 기대효과를 알아보고,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측면에서 분석한다.

1. 효용 측면의 기대효과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효용으로는 근로소득 공제와 부가가치세액 면제 등의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현금사용내역 조회, 연말정산 서류 출력, 복권당첨내역 확인 등의 기능이 있다.

가. 소비자 측면

소비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의 20%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다.⁸⁾ 이것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전인 2004년도까지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한 것과 다르다. 즉, 소득공제 대상인 총급여액의 초과금액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공제대상 금액을 축소한 것이다. 이 결과 [표 12]와 같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7) 현금영수증제도는 외국의 유사한 사례가 없고, 시행초기라는 면에서 실적 자료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세수확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분석할 수 없었음.

8) 이 경우 청소년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부모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는다.

2,000만원이고, 5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가정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포함하더라도 세금혜택은 총 710,600원이고, 전년도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의 세금혜택은 627,200원인 바, 불과 83,400원의 추가 혜택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현금영수증을 하나도 발급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금혜택은 523,600원으로 오히려 전년도 627,200원 보다 103,600원이 적은 금액을 공제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표 12] 현금영수증 세금혜택 비교¹⁾

연 도	구 분	계산식	결과 및 혜택	
2004년	소득공제	$(2,000\text{만원} - 4,000\text{만원} \times 10\%) \times 20\% =$	320만원	
	세금혜택	$320\text{만원} \times 19.6\% (\text{주민세 포함한 세율}) =$	627,200원	
2005년	현금영수증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2,000\text{만원} - 4,000\text{만원} \times 15\%) \times 20\% =$	280만원
		세금혜택	$280\text{만원} \times 18.7\% (\text{금년부터 소득세율 인하}) =$	523,600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	$(2,500\text{만원} - 4,000\text{만원} \times 15\%) \times 20\% =$	380만원
		세금혜택	$380\text{만원} \times 18.7\% (\text{금년부터 소득세율 인하}) =$	710,600원

주: 1)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2,000만원, 현금 500만원을 사용할 때 비교한 것임.

자료: 조선일보, 2005. 2. 23 활용 제작성

나. 사업자 측면

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발행 수수료 부담이 없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즉,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 영수증

과 다르게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고,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제외)를 받는다.

다만, 음식·숙박업자 중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5%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또한, 사업자의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130%를 초과한 경우 증가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고,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그리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수취한 경우 적격 영수증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16조에 근거) 해준다.

그러나 이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 사업자에게 발급금액의 1%를 세액공제를 받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자들은 세액공제 금액이 적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유인책으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2. 문제점

가. 제도적 측면

(1)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 저조

앞의 추진현황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건수를 보면,⁹⁾ [표 13]에서 보듯이 2005년 5월 15일 현재 1일 평균 발급건수는 112만 건이고, 2005년도 1월 1일 부터 5월 15일 까지 총 발급건수는 1억 919만건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체 104만 1천개 가입가맹점 당 1일 평균 1번 정도의 발

9) 발급실적 등은 앞의 [표 4~6] 참조.

급실적 밖에 안 되고, 당초 2009년까지 신용카드 거래건수의 2배(36억건) 이상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을 목표¹⁰⁾로 추진한 것과 비교할 때 제도시행 초기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표 13] 현금영수증 발급 목표 대비 실적

		목 표	실 적		비 고
			실적	비율(%)	
영수증 발급	1일 발급 건수	986만 3천건	112만건	11.4	36억건을 365일로 나눔
	2009년 목표	36억건	1억 919건		2005. 1. 1 ~ 5.15 까지임
가맹점 가입	가입 대상 선정	100만개소	104만 1천개소	104.1	
	실제가입대상	112만 7천개소	104만 1천개소	92.4	신용카드 가맹점 113만개
홈페이지 가입		300만명	342만 4천명	114.1	

자료 : 국세청,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2005. 6.) 활용.

(2) 영수증 발급기피, 세원 노출 소비자 전가

세원 노출을 꺼려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자영업자가 많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 세원노출을 꺼려 사업자의 세금 비용을 미리 소비자에게 원래의 제품가격에 웃돈을 얹어 요구함으로써 영수증 발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가 대형 전문 유통상가¹¹⁾ 등에서 흔하게 발생되고 있다.

한편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도 소비자에게 현금 거래에 따른 영수증 발급에 있어 소액거래일 경우 번거로운 영수증 발급절차 문제, 특히 사업주 또는 가게 종사자와 안면이 있을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청구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다.

10) 국세청, 2005년 사업비 설명자료, 2004. 5.

11) 남대문, 동대문, 용산전자 상가 등을 말함.

또한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소에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구제수단 즉, 영수증발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 병의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취약계층 중점관리 문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과약이 과세현실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과약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중 변호사, 의사 등에 대한 소득과약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표 14]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현황을 보면, 전체 업종별로 2004년도에 91.7%가 가입을 하였으나 병·의원을 제외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가맹률이 84.5%에 불과한 점이 이를 잘 나타내 준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가맹이 되어야 만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신용카드 가맹률 저조는 현금영수증 시행을 위한 저해 요소가 되므로 우선적으로 이들 업종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14] 업종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현황

(단위: 명, %)

		합 계	소 매	음식	숙박	병의원	학 원	전문직	서비스	기 타
2003년 12월	가맹대상 사업자수	564,154	258,065	152,190	9,298	36,562	24,346	20,160	60,109	3,424
	가맹	525,006	238,405	147,209	9,090	36,170	21,704	17,408	51,921	3,099
	대상대비 가맹률	93.1	92.4	96.7	97.8	98.9	89.1	86.3	86.4	90.5
2004년 12월	가맹대상 사업자수	576,985	252,657	158,548	9,887	39,810	26,703	21,801	64,437	3,142
	가맹	529,104	228,192	152,965	9,673	39,476	23,183	18,432	54,396	2,787
	대상대비 가맹률	91.7	90.3	96.5	97.8	99.2	86.8	84.5	84.4	88.7

주: 신용카드 가입대상사업자는 아래 [표 14]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다르게 소비자 상대 업종중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함.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출 자료), 2005. 6.

[표 15] 현금영수증가맹점 업종별 가입현황(2005. 5. 15 현재)

(단위: 천개)

합계	소매	음식·숙박	병의원	학원	서비스	기타
1,027	357	334	45	26	102	163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출 자료), 2005. 6.

나. 시스템 측면

(1) 소비자 인지도 저조, 신용카드 가맹 비용 증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제도인 만큼 그 동안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이 현금영수증제도의 이용방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주로 현금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든지 적립식 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영수증 발급 절차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도 영수증 발급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에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소비자 자신의 현금영수증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신용카드에 먼저 가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전용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2)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정보를 서버에 저장할 때에 중요 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수록함으로써 외부 사용자는 물론 내부 시스템 관리자도 사용자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제도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납세 내역을 조회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13자리 숫자가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면서 내부 직원 또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다. 효용 측면

앞의 소비자 및 사업자 효용 측면의 평가부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는 전년도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도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 받아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는 전년도보다 세금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사업자의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 사업자에게 발급금액

의 1%(5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고,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130%를 초과하는 가맹점의 사업자에게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 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자들은 세액공제 금액이 적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유인책으로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IV.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

현금영수증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제도적 측면과 시스템 측면, 그리고 효용측면에서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적 측면

가. 영수증 생활화 운동 등 홍보활동을 통한 발급실적 제고

과세자료의 확보와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의 현금영수증제도의 목적과 시행 필요성 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영수증 발급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높여 국민들에 대한 유인체계를 실질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취약계층 중점관리 강화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규모는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그 소득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일반 근로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조직적·의도적인 경우가 많으며, 수법도 다양화·정교화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사전담 관리조직을 편성하여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다.

2004년도 병·의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99.2%로 높은 편이나,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호사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률이 84.5%로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 소득과약률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과세현실화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대해 매년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조사’를 하여 업종별 소득탈루 현황을 집중·과약하여 공개함으로써 탈세를 예방하고 고액 현금거래 내역을 밝히는 것이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에도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현금영수증복권제도의 상금구조 변경

정부는 기존에 실시해 오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복권당첨금액을 줄여서 시행하고, 그 줄인 금액을 현금영수증복권 제도에 투입하여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계속 홍보한 것과 달리 현금영수증제도는 순수한 정부 사업이므로 영수증복권을 통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현금영수증복권 제도실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차원에서 복권에 대한 당첨 확률을 높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표 16]과 같이 현행 상금구조를 변경하여 1등 상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정도로 높여 물가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 상금액이 1만원인 5등은 금액이 적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므로 4등 50만원(100명), 5등 10만원(1,000명) 정도로 상금은 늘리고, 인원을 줄임으로써 복권제도의 당첨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복권제도를 변경할 경우 그 소요금액은 현행 매월 2억 4,500만원에서 4억 8,500만원이 되어 매월 2억 4,000만원이 더 소요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8억 8,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결과가 된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 생활영수증보상금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변경 비교

(단위: 명, 만원)

등위	신용카드복권		현금영수증복권(현행)		현금영수증복권 (개선변경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등	1	1억원	1	1억원	1	3억원
2등	2	1,000	2	1,000	2	1,000
3등	3	500	3	500	3	500
4등	20	10	100	10	100	50
5등	3,000	1	10,000	1	1,000	10
합계	3,026	1억 6,700	10,026	2억 4,500	5,000	4억 8,500

자료 : 국세청, 2005, 자료 활용 재작성.

한편, 생활영수증보상금 예산현황을 보면, [표 17]에서와 같이 2003년 165억 2,000만원, 2004년 93억원, 2005년 88억 4,000만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에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른 보상금 예산 41억 200만원을 포함하여도 전년도보다 적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복권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요청된다. 이 경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금영수증제도 보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잘 정착된 신용카드복권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17] 생활영수증보상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03예산	2004예산(a)	2005예산(b)	증감(b-a)	
				증감액	비율(%)
신용카드·직불카드	16,520	9,370	4,738	4,632	△49.4
현금영수증	-	-	4,102	4,102	-
합계	16,520	9,370	8,840	530	△5.7

자료 : 국세청, 2005.

2. 시스템 측면

가. 미가입 자영업자 대책, 현금영수증제도 거래 단계적 의무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미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제도혜택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소득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¹²⁾시 활용하는 등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금영수증 거래를 의무화하는 경우 노후 신용카드 단말기의 교체에 따른 사업자의 비용부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진행 추이를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고액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정비 및 기타 고려사항

금융기관들은 최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신상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를 위해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나 전산망을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의 앞 또는 뒷자리 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경우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현금거래를 많이 하는 재래시장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과 인터넷 쇼핑몰 거래,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12)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 거부자에 대한 조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하였다(2004. 12.).

3. 효용 측면

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사업자 세액 공제 확대

앞에서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른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혜택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는 2004년도에 연간 근로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2005년부터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과 함께 연간 근로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현금과 신용카드 합산)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소득세율이 일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금액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받아도 세금혜택이 전년도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득세부담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는 [표 18]에서와 같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¹³⁾는 사실도 유념하여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자들은 세액공제 금액이 적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유인책으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세부담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세목간의 상재적 역할 차이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함.

참고로, 2005년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4도 수준인 19.7%가 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고, 이것은 OECD 회원국들의 2002년 조세부담률 평균인 27.3%보다 낮은 수준으로 OECD 30개국 중 27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홈페이지(재경부 자료 인용)

이에 덧붙여 자영업자들은 현재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세율이 너무 높게 정해져 있어 추가로 실시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차라리 세율을 낮추어 현실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 18] OECD 주요국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¹⁾

(단위: %)

		한 국 ²⁾	미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이탈리아	영 국	멕시코
2002년 기준	조세부담률	22.7	21.8	27.7	21.7	17.0	28.6	29.8	14.7
	국민부담률	28.0	28.9	44.2	36.2	27.3	41.1	35.9	18.0
국민소득 1만\$	달성연도	(2002)	(1978)	(1979)	(1979)	(1981)	(1986)	(1987)	-
	조세부담률	(22.7)	(21.6)	(23.9)	(25.1)	(19.3)	(22.6)	(30.8)	-
	국민부담률	(28.0)	(26.8)	(40.2)	(37.9)	(27.1)	(35.9)	(38.1)	-

주: 1) OECD 30개국 평균 조세부담율은 27.3%, 국민부담율은 37.5%이며, 우리나라는 주요선진국의 1인당 1만달러 달성연도의 조세부담율과 비슷한 수준임.

2) 우리나라는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후 '98년에 하락, '02년 재진입.

자료: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자료실 국세통계, 2004. 2. 7. 현황

이 밖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위하여 소비자가 개인별로 한꺼번에 증빙서류를 출력할 경우 시스템 가중으로 인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V. 결론

조세정의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¹⁴⁾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달성하여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투명하게 노출되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수평적 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¹⁵⁾.

한편 우리 국민에 대한 납세의식을 조사한 결과¹⁶⁾, 우리 국민의 65.1%가 납세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세부담감이 실제 조세부담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부담의 적정성·공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들과 일반국민들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어야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조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조세에 대한 국민정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은 조세정의를 위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세율을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의 형평성을 위하여도 필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금영수증 발급기피와 발급실적 저조, 발급유인 보상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소극적인 발급요구, 국민인식 부족, 복권제

14)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고, 수직적 형평성은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5) 김재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12. p16

16) 납세에 대한 순응도에서 “세금을 기꺼이 낸다”는 납세자가 34.9%에 불과하고, 나머지 44.8%가 “어쩔 수 없이 낸다”이며, 20.3%가 “빼앗기는 기분이다”라는 응답이 나왔다.

도의 상금구조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가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현금영수증제도가 국민의 생활속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결국 현금영수증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자영업자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액현금거래를 하는 취약계층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발급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들 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한, 현금영수증복권제도의 상금구조를 당첨금액이 높게 변경하여 홍보효과와 함께 당첨효과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시스템 측면에서는 제도홍보를 통해 미가입 자영업자에 대해 가입을 권장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정비하며, 체크카드와 연계하여 휴대폰 하나로 현금 계좌 결제가 가능(UMPS 체제 활용)¹⁷⁾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고액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 및 사업자 효용측면에서는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큰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업자들은 세액공제 금액이 적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유인책으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현행 세율을 낮추어 현실화함으로써 현금영수증제도 실시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양심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재래시장과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

17) UMPS(Universal Mobile Payment Service)란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한 결제와 각종 금융·비금융 부가서비스를 휴대폰 하나로 가능하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통신·금융 컨버전스 서비스임.

서정욱 외, “세계가 놀란 한국 핵심산업기술” 김영사, 2002. 5. 15. p217

도록 조세행정을 체계화·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과제를 통해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으로써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이로써 근거과세를 함으로써 형평과세가 이룩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 록

부가가치세 제도 시행이후 영수증 행정관련 추진업무

기 간	주요 추진 업무
1977. 7 ~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조기정착을 위하여 영수증 행정 강력 추진 (주로 금전등록기 영수증 중심) - 금전등록기 보급, 세액공제제도, 성실발행지도 등 ○ 영수증 보상금 지급과 영수증 복권제 실시(1977)
1980 ~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보상금 지급과 영수증 복권제 폐지(1년간 시행) ○ 금전등록기 관리 강화(1985) - 금전등록기 관리번호 부여 등
1988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행정의 중점을 금전등록기 영수증에서 신용카드로 전환(1988) -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확대를 위한 유인 및 변칙거래 규제방안 마련 - 신용카드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기능화 및 세액공제
1991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 의무화(1991) ○ 영수증 행정의 대상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로 국한하여 정부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예산집행과 연계하는 방안 추진
1996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사용유인, 신용카드 가맹권장 및 미가맹업소에 대한 세정개입강화 - 세액공제 범위, 접대비 의무사용비율의 상향 조정 - 신용카드 사용소득공제 제도 도입(1999. 9)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2000)
2005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2005)

자료: 김재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p. 8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⑤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법 제126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세청에 두고,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국세청 개인납세국장·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2.19>

1. 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내용·송부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⑤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⑧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설치건수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결제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12.30]

참고문헌

1.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국무조정실, 2004. 12.
2. 국세청, 「국세행정 정보화 중장기 계획」, 국세청, 2003. 12.
3.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홍보자료, 국세청, 2005. 1.
4.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관련자료, 국세청, 2005. 3, 2005. 6.
5. 국세청, 국회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국세청, 2005. 6.
6. 국세청, 보도자료,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추진현황, 국세청, 2004. 4. 5.
7. 국세청, 보도자료, 「현금영수증가맹점」 단계적 확대 계획. 국세청, 2004. 6. 16.
8.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현금영수증제도」시행 한달간의 성과와 활성화 대책, 국세청, 2005. 2. 2.
9. 김영배, 「부가가치세제상 신용카드활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0. 대한민국국회, 「2004년도국정감사회의록」, 재정경제위원회.
11. 대한민국국회, 「2003년도국정감사회의록」, 재정경제위원회(부록).
12. 서정욱 외, “세계가 놀란 한국 핵심산업기술” 김영사, 2002. 5. 15.
13. 전승훈·김재진,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세행정 개선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2년 3월호, 2002. 3.
14.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15. 김재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16.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17. 한상국의 2인, 「신용카드 거래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증권빌딩 17-19층
Tel. 02)2070-3114 <http://www.nabo.go.kr>